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73호

2019. 12. 4.

건 명	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 ·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(민원토지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9. 11. 15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11. 15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이 조례에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2014. 07. 29일자로 분리 개정된 「공인중개사법」과 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에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・징수 세부기준이 명시 되어 있어 「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・ 징수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폐지

□ 검토의견

○ 2014. 07. 29일자로 분리 개정된 「공인중개사법」과 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・ 징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조, 제2조, 「공인중개사법」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